보건복지부

2019년 1월부터
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
더 완화됩니다!
12월부터 신청하세요!



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래와 같이 추가 완화됩니다.

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소지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!

부양의무자 가구에 〉

① 기초연금 수급자※ 또는 ② 장애인연금 수급자

※ 단, 기초연금수급자 포함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미적용하며,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특성을 보유하지 않은 부양의무자 가구는 조사대상에 포함됨

가 포함되어 있거나

+

수급(신청)자가 〉

③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

인 경우

→ **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**



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?

보건복지부 상담센터(국번없이 129)

거주하는 지역의 **시·군·구청** 또는 **읍·면·동 주민센터**에 문의